

## 붙임 1. 상황별 소득증명서류

- 소득증명서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며, 전년도 소득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(첨부 필수,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  - 사업자의 경우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, 전년도 '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'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  - 소득이 없을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'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※ 이직을 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이직 전 직장의 소득이 이직 후 직장의 소득에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시어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,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**추가로** 제출하시어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직장소득(3개월 이상)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,
  - '입사일부터 현재까지'를 기간으로 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서를 **추가로**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-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,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**추가로**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확정금액이 아닌 경우(수당, 상여, 시급 등), 근로계약서로 소득증명 대체가 불가능합니다.

※ 은행 대출심사는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(급여명세서 필수)

- 이 경우 연소득은 '(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/근무개월수) × 12개월'로 환산하여 심사합니다.
- 위 세 가지 대체서류 발급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,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임금주요한 통장내역을 **추가로**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장내역 제출 시, '국세청 홈택스>My 홈택스>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' 페이지 캡처본(상단에 본인 성명 노출)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(프리랜서 등)로 현재 근로중인 경우,
  - 연소득 환산이 불가하므로, 최근 1년간 근로한 업체의 근로기간증명서류[근로계약서, 프리랜서계약서 등] 전부와 1년치 소득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업종의 유사성이 있는 여러 근로계약 건은 연속성이 인정되어 그 계약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사업소득(연 4천만원 이하) 또는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(비근로)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,

→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②최종적으로 재직했던 직장의 직인이 찍힌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**추가로**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퇴직/폐업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.

※ 최종 재직 직장의 근로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상 최종 재직 직장 가입이력으로 퇴직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.

※ 기혼자의 경우, 배우자 소득서류도 위의 기준에 따라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부모 소득서류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▶ 소득금액증명원 귀속연도의 부모 합산소득은 7천만원을 초과하나 귀속연도 이후 퇴직 및 폐업을 하여 부모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, 퇴직증명서(경력증명서) 또는 폐업증명원을 **추가로** 첨부하시면 됩니다.

※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)은 5월 이후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날짜임에도 전년도 분만 단독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, 발급 시 귀속연도를 '전전년도~전년도'로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※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심사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은행 대출심사 시에도 연소득 자격심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. 대출 시 자격조건에서 벗어난 소득이 파악될 경우에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